

10.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8-37호 1998. 2. 7

주요 골자

- 가. 해외건설관련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해외건설업종을 건설산업기본법 분류에 맞춰 조정함.
- 다. 해외건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
- 라.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된 한국통신공사를 삭제하고,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포함 함.
- 마.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학·경력 기술자를 인정함
- 바. 해외공사 상황보고 의무에서 입찰결과보고와 다음연도 해외공사수주계획보고 의무를 삭제함.
- 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정보체계구축, 교육훈련사업 및 건설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 해외건설협회의 비상임이사를 10인에서 13인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개정 이유

국내 건설관련 법개정으로 건설업종이 조정됨에 따라 해외건설업종을 조정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건설관련 일부 보고사항을 삭제하는 등 해외건설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식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

주택회보